

94.7.14

전통적 며느리역할 소홀

이혼사유 해당

며느리가 시부모의 생신 때에 시댁에 가기를 꺼리는 등 전통적인 예의범절을 무시한 채 자신의 생활방식만을 고집하는 것은 이혼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전봉진 부장판사)는 13일 이아무개(40)씨가 부인 황아무개(37)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에서 이렇게 밝히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만 며느리인 황씨가 시부모의 생신이나 명절에 시골에 계신 시부모를 찾아뵙기를 꺼리는 등 전통적인 며느리의 역할을 소홀히한 데서부터 부부생활에 금이 가기 시작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어머니가 가끔씩 서울에 올라와 집안일을 거들어 주었는데도 황씨는 방안으로 들어가 음악을 크게 트는등 시부모에게 성실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자신의 생활방식과 주장만을 고집하면서 가족갈등을 불러일으킨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김의겸 기자